

[별표 12] <개정 1999.7.1>

용기의 안전점검기준(제20조관련)

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용기의 내·외면을 점검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·금·주름 등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
2. 용기는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
3.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,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
4. 유통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것. 이 경우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을 것
5. 용기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
6. 재검사기간의 도래여부를 확인할 것
7. 용기아래부분의 부식상태를 확인할 것
8. 밸브의 몸통·충전구나사·안전밸브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·주름·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
9.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에 의하여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
10. 밸브의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